

3. 최고영적지도자과정 운영규정

제정일 : 2007년 10 월 17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최고영적지도자과정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최고영적지도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운영) ① 총장은 과정에 대한 교학, 회계, 기타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② 본교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교무위원회는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강생의 정원, 입학 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담당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수강생모집) 이 과정의 수강생은 총장이 사전 공고하여 50명 내외로 모집한다.

제5조(수강자격)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교회와 사회의 참신한 지도급 인사
2. 기타 이 과정의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절차) 이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형방법) 과정의 수강생 모집을 위한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전형기준은 입학사정 원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기간) 과정의 기수별 수강기간은 40주로 하되 4학기로 나눈다.

제9조(개강) 개강은 3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강등록) 합격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금반환)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

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출석) 수강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시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2.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사망진단서 사본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와 총장의 승인으로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

제13조(수료) 학기별 수업일수의 7/10이상 출석한 자에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제14조(증명서 발급) 과정의 재학자 및 수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총장은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상훈 및 징계) ①재학기간 중 본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수료시에 표창을 하며, 수료한 자에게는 본교 국제이사로의 위촉 및 국제이사회에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②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학칙 제44조에 의거 제적 및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자치회)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 기수 자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